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28
----------	------

발의연월일 : 2017. 2. 22.

발의자 : 신보라 · 하태경 · 임이자  
함진규 · 이종배 · 권석창  
조훈현 · 경대수 · 박덕흠  
정운천 · 윤종필 · 송희경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이에 위탁운영단체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불응하는 등의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위탁운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18조의3제2항·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제3항 신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6조제2항에”를 “제16조제3항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안전점검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 안전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제2항제6호 중 “제16조제3항에”를 “제16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8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제1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u>제16조 제2항에</u> 따른 위탁운영 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 ----- ----- --- <u>제16조 제3항에</u>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생략) <u>&lt;신 설&gt;</u>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u>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u>&lt;신 설&gt;</u>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

약의 해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안전점검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 점검) ① (생 략)

<신 설>

<신 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 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 안전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점검에

		<p><u>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p>
<u>②</u> · <u>③</u> (생 략)		<p><u>④</u> · <u>⑤</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① (생 략) <u>&lt;신 설&gt;</u>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p><u>②</u>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p> <p><u>③</u>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u>④</u> ~ <u>⑦</u>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
<u>&lt;신 설&gt;</u>		
<u>②</u> ~ <u>⑤</u> (생 략)		
제7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제7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u>제16조제3항에</u>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 ----- --- <u>제16조제4항에</u>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7의2. 제18조의3제3항 후단을</u> <u>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u> <u>에 따르지 아니한 자</u> <u>7의3. 제19조의2제3항 후단을</u> <u>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u> <u>에 따르지 아니한 자</u>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